

금연캠퍼스 추진현황 및 향후 확대방향



이건아
금연사업팀 부연구위원

The current situation of Smoke-Free campus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.

- 금연캠퍼스와 관련한 연구문헌에서 금연캠퍼스 정책은 젊은 성인인구 흡연의 비규범화, 비흡연의 규범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
- 우리나라의 금연캠퍼스는 정책적 지원이나 체계적 기술지원 없이 대학 내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며, 우리나라의 금연캠퍼스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사항으로는 흡연권과 혐연권 간의 양립, 금연 구역의 지정에 대한 미숙한 운영 관리 등이 있음
- 금연캠퍼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금연캠퍼스 정책에 대한 이해 및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, 대학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관련 규정 및 금연캠퍼스 운영가이드라인의 마련, 통합적 금연 지원 프로그램 등의 기술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

1. 서론

- 우리나라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하여 실내·외 금연구역이 지정되었으며, 정책적 지원이나 체계적 기술지원 없이, 비흡연자 간접흡연의 위험성, 깨끗한 캠퍼스 환경 구축 등의 이유로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금연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음
 -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제4항 제7호에서 교사(校舍)로만 정의하고 있음

- 미국의 금연캠퍼스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, 대학 내 금연정책 적용 후 대학생들의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¹⁾,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대학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, 태도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²⁾
 - Lupton JR와 Townsend JL(2015)은 메타분석결과 금연정책 적용 전 흡연율 16.5%에서 금연정책 적용 1년 후 흡연율 12.8%로 감소 되었음을 보고함
 - Murphy-Hoefer R외(2005)는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금연정책 적용 전과 비교하여, 금연정책 적용 후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개선 및 금연에 대한 인식과 동기 부여가 증가되었음을 제시함
- 우리나라의 금연캠퍼스 정책은 준비 단계이므로 2016년 이미 1,480여개의 대학에 금연정책을 적용한³⁾ 미국의 정책 추진동향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연캠퍼스 정책 배경, 금연캠퍼스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

2. 미국의 금연캠퍼스 정책 추진현황

- 미국은 1970년 제정된 대기 오염 방지법(Clean Air Act)을 바탕으로 실내 공기 오염 방지법(Clean Indoor Air Act) 등 각 주별로 다양한 형식의 흡연규제법을 두고 있으며⁴⁾, 금연캠퍼스법 등 흡연 규제 관련법이나 공립 대학 연합 또는 대학 내 자체적 금연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금연캠퍼스 정책을 추진함
 - 아이오아 주(州), 루이지애나 주 및 오클라호마 주는 흡연 규제 관련법을 통해 대학캠퍼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으며, 아칸소 주와 일리노이 주는 금연캠퍼스 법을 통해 캠퍼스 내 차량을 포함한 캠퍼스 내 실내·외 장소에서 담배의 사용을 금지함
 - 캘리포니아 주, 조지아 주 등 각 주별 공립대학 연합은 금연캠퍼스 정책 규정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 향상을 위하여 캠퍼스 실내·외 장소에서 학생, 직원, 교수, 방문자의 담배 사용을 금지함
 - 하버드 대학교, 프린스턴 대학교, 에모리 대학교 등 사립대학은 대학 내 자체적 금연규정을 통해 건강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하여 캠퍼스 내 실내·외 장소에서 학생, 직원, 교수, 방문자의 담배 사용을 금지함
- 미국에서는 미국암협회(American Cancer Society), 캘리포니아 청소년 지원 협회(California Youth Advocacy Network), 금연대학 캠퍼스 주도체(Tobacco-Free College Campus Initiative) 등의 기관에서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금연캠퍼스를 지원함
 - 미국암협회의 경우, 금연세대 캠퍼스 주도체(Tobacco-Free Generation Campus Initiative)를 운영하며 100% 금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하여 1년 동안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지원 및 진행사항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함⁵⁾

1) Lupton JR, Townsend JL(2015), A Systematic Review and Meta-analysis of the Accep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University Smoke-Free Policies, J Am Coll Health, 63(4), 238-243

2) Murphy-Hoefer R, Griffith R, Pederson LL, Crossett L, Iyer SR, Hiller MD(2005), A review of interventions to reduce tobacco use in colleges and universities, Am J Prev Med, 28(2), 188-200

3) American Nonsmokers' Rights Foundation, <http://www.no-sm20oke.org/pdf/smokefreecollegesuniversities.pdf>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

4) Cho JH(2007), A study on the fundamental right and none smoker's right,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, 18(2), 337

5) American Cancer Society, <http://www.cancer.org/healthy/informationforhealthcareprofessionals/american-cancer-society-tobacco-free-generation-campus-initiative>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

- 100% 금연정책이라 함은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 내 실내·외 모든 장소 및 시설에서 상시 학생, 교수, 직원과 방문자 모두 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함
- 캘리포니아 청소년 지원 협회의 경우, 금연캠퍼스 운영 가이드라인, 포스터, 책자 등 금연교육자료, 흡연자를 위한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, 대학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금연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금연캠퍼스 정책을 채택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함⁶⁾[그림 1]
- 금연대학 캠퍼스 주도체의 경우, 금연캠퍼스 운영 가이드라인, 금연교육자료 등 대학에서 금연캠퍼스 정책을 채택하고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며, 미국 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미국 비 흡연 권리 재단 (American Non-Smokers' Rights Foundation)의 기준에 맞추어 금연캠퍼스를 인증함⁷⁾

[그림 1] 캘리포니아 청소년 지원협회 금연캠퍼스 운영 가이드라인의 금연주머니(Quit Kit)와 포스터



- 미국 비 흡연 권리 재단의 경우 금연캠퍼스정책 가이드라인, 대학 내 금연교육 실무자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금연캠퍼스 정책을 채택하고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며 미국 내 금연캠퍼스 현황 정보를 제공함⁸⁾(표 1)

6) California Youth Advocacy Network. <http://cyanonline.org/college/>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

7) Tobacco-Free College Campus Initiative, <http://tobaccofreecampus.org>에서 12월 23일 인출

8) Americans for nonsmokers' rights, <http://www.no-smoke.org>에서 12월 23일 인출

〈표 1〉 미국비흡연권리재단의 금연캠퍼스정책 가이드라인⁹⁾

〈금연캠퍼스 정책 제정 단계〉

1. 캠퍼스 내 금연캠퍼스 정책 제정에 대한 의사 결정방법을 결정함
 - 학생 대표, 교수 대표 등 의사결정권자, 금연캠퍼스 정책 세부사항 결정 방법 정의
2. 금연캠퍼스 정책 목표 및 내용을 결정함
 - 1) 금연캠퍼스 필요성 또는 목적
 - 2) 금연캠퍼스의 정의
 - 대상, 지역, 금연 등에 대하여 정의
 - 3) 금연캠퍼스 정책 공지 방안
 - 4) 금연캠퍼스 정책 이행 기간
 - 5) 금연캠퍼스 정책 위반 시 처벌
3. 금연캠퍼스에 대한 학생, 교수 및 직원의 의견을 조사함
4. 간접흡연의 위험성 등 금연캠퍼스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시행함
 - 학교신문사와 협력하여 홍보함
 - 학생대표, 교수대표 및 직원대표를 대상으로 금연캠퍼스 옹호에 대하여 서면 승인을 받음
 - 학교 내 social network 활용하여 홍보함
5. 캠퍼스 내 금연캠퍼스 정책 수용하도록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

〈금연캠퍼스 정책 집행 가이드라인〉

1.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결정된 금연캠퍼스 정책에 대해 미리 통보함
2. 긍정적인 메시지를 포함한 금연캠퍼스 표지판을 설치함
 - 표지판 설치 장소를 결정함
 - 금연캠퍼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함
3. 금연캠퍼스 불만사항 및 요청사항에 대한 절차 수립함
4. 금연캠퍼스 정책 집행 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

자료 : "http://www.kpipa.or.kr/info/newsList.do?board_id=1"에서 2016년 11월 28일 인용

- 2016년 10월, 미국의 경우 100% Smoke-Free campus는 1,713개 운영 중이며, 그 중 100% Tobacco-Free campus는 1,427개 운영 중임¹⁰⁾
 - Smoke-Free campus는 대학 내 실내·외 모든 장소에서 상시 학생, 직원, 교수 및 방문자 모두 가연담배의 사용을 금지하는 캠퍼스로 정의함
 - Tobacco-Free campus는 대학 내 실내·외 모든 장소에서 상시 학생, 직원, 교수 및 방문자 모두 담배제품 (비가연 담배 포함)의 사용을 금지하는 캠퍼스로 정의함

9) Americans for nonsmokers' rights, http://www.no-smoke.org에서 12월 23일 인출

10) Tobacco-Free College Campus Initiative, http://no-smoke.org/pdf/smokefreecollegesuniversities.pdf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

3. 미국의 금연캠퍼스 운영사례

□ 공립대학연합 소속 중 조지아하이랜드대학(Georgia Highlands College) 사례¹¹⁾

- 2004년 대학 자체적으로 학생, 직원 및 교수 대상으로 금연정책 시행 시, 대학 내 3개 캠퍼스간의 규정이 일관되지 않았으나, 2014년 조지아 대학 연합의 금연캠퍼스 정책 채택을 통하여 3개 캠퍼스간의 일관된 금연캠퍼스(Tobacco-Free campus) 정책 시행함
 - 1970년에 설립된 2년제 공립대학으로 플로이드, 카터스빌, 더글래스빌 캠퍼스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, 6,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40개 분야의 전공 학사를 배출 중에 있음
- 캠퍼스 내 흡연 시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함
 - 대학 내 경호원이 캠퍼스 내 흡연 학생을 모니터링하며, 1994년부터 2014년까지는 적발된 흡연 학생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1회 적발 시 경고, 2회 이상 적발 시 교칙에 의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
-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함
 - 대학 내 자체적으로 개발된 금연지원서비스 또는 전담직원은 없음
 - 대학 내 약물·알코올 중독 재활센터에서 금연을 원하는 학생, 직원 및 교수에게 미국암협회, 미국폐협회, 조지아 공중보건국 등의 전화 코칭 프로그램, 금연 교육 등의 금연지원서비스 정보를 전달함
 - 흡연을 하는 교직원에게는 매달 75달러의 보험금을 추가 부과하여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 유도함

□ 사립대학 중 에모리대학교(Emory university) 사례¹²⁾

- 2011년 James W. Wagner 총장주도하에 인사처, 학생처, 입학처, 건강센터, 교수, 직원, 학생 대표로 구성된 금연위원회(Tobacco-Free task force) 구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금연캠퍼스 정책안을 형성하였으며, 2012년 금연캠퍼스(Tobacco-Free campus) 정책 시행함
 - 1836년에 설립된 4년제 사립대학으로 에모리 대학병원을 포함한 면적 2.6km²에 이르는 미국 내 친환경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, 14,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70개 분야의 전공 학사를 배출 중임
 - 금연캠퍼스를 운영함에 있어, 금연캠퍼스 정책 형성 및 집행 시 학생, 직원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함¹³⁾
- 무기명으로 흡연 위치만 보고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캠퍼스 내 흡연 사례 모니터링 중임
 - 2013년 학부 학생으로 구성된 흡연 감시팀을 운영하였으나, 간접 흡연 가능한 장소를 학생들이 순찰함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4년 운영 중단함

11) Georgia Highlands College. <https://www.highlands.edu/>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

12) Emory university, <http://www.tobaccofree.emory.edu/>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

13) 2016년 11월 10일 시행한 Emory university의 prevention strategies assistant director, Raphael Coleman 인터뷰 중

- 흡연 위치 보고 시스템을 통한 캠퍼스 내 흡연 사례는 별도의 처벌 없이 금연표지판 추가 설치 위주로 이루어졌으나, 보고 사례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2015년부터 흡연 사례 모니터링 순찰 및 반복된 위반에 대한 경고 등 제재 강화함

○ 대학 내 학생건강센터 및 에모리 클리닉을 통하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함[그림 2]

-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센터에서 최대 3회 금연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며, 필요시 정신건강치료 및 니코틴 보조제를 유료로 처방함
- 교수, 직원 및 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교직원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며, 에모리 클리닉을 통해 필요시 니코틴보조제를 무료로 처방함
 - 흡연을 하는 교수, 직원 및 교직원 가족에게는 매달 50달러의 보험금을 추가 부과하며 금연지원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함
- 금연을 원하는 학생, 직원, 교수 및 교직원 가족에게 미국폐협회, 대학 연계 보험회사, 조지아 공중보건국 등의 전화 코칭 프로그램, 온라인 금연상담 등의 금연지원서비스 정보를 전달함

[그림 2] 에모리대학교 금연캠퍼스 표지판과 교직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안내문



□ 사립대학 중 스펠만대학(Spelman college) 사례¹⁴⁾

- Beverly Daniel Tatum 총장 주도하에 건강센터, 인사팀, 교수, 직원, 학생 대표로 구성된 금연위원회(Smoke-Free task force)를 통해, 2014년 자체적으로 금연캠퍼스 정책안을 마련하였으며, 2015년 금연캠퍼스 (Smoke-Free campus) 정책 시행함[그림 3]

14) Spelman college, <http://www.spelman.edu>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

- 1924년에 설립된 4년제 사립 인문 과학 대학으로 ‘역사 깊은 흑인여성대학(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)’ 소속이며, 2,1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28개 분야의 전공 학사를 배출 중임
- 금연캠퍼스 정책 제정 및 시행 시 대학 구성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학생, 교직원 및 교수들의 금연 캠퍼스 정책에 대한 동의는 필수 사항임
 - 2014년 금연캠퍼스 정책 안 형성 후 정책시행 전까지 7~8개월 동안 총장이 직접 학생, 교직원 및 교수들과 지속적으로 의사 소통 하였으며, 정책 시행 시에도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스피elman 대학의 금연캠퍼스 정책 소개, 필요성 및 추진 과정 등의 감사 내용을 담은 총장의 서신을 발송함
 - 금연캠퍼스 내 적발된 흡연 학생은 스피elman 대학 내 건강센터에서 상담을 통한 금연교육이 시행되며, 재적발 시 교칙에 의해 제재가 이루어짐
- 대학 내 학생건강센터 및 지역사회 협약기관을 통하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함
 - 금연캠퍼스 정책 안 형성 후 금연캠퍼스 정책 시행 전까지, 대학과 연계된 보험회사를 통하여 대학 구성원에게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
 - 학생, 교수 및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센터에서 혈압, 체중 등 기본 건강상태 확인 후 금연상담 및 금연 교육을 시행함
 - 금연을 원하는 학생, 직원 및 교수에게 미국폐협회, 미국질병관리본부, 조지아 공중보건국 등의 전화코칭 프로그램, 온라인 금연상담 등의 금연지원서비스 정보를 전달함

[그림 3] 스피elman대학 금연캠퍼스 정문 앞 표지판과 건물 내 표지판



4. 시사점

- 미국의 금연캠퍼스 정책 추진현황을 검토하였을 때, 금연캠퍼스 정책은 대학캠퍼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흡연규제관련법이나 금연관련 규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, 금연캠퍼스 운영가이드라인, 금연지원서비스 등 금연캠퍼스 운영에 대한 기술적, 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 - 2015년 미국의 18~24세 흡연율은 13.0%¹⁵⁾, 2014년 우리나라의 19~29세 흡연율은 22.5%¹⁶⁾임을 감안할 때 금연캠퍼스 정책 수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 금연캠퍼스 지원내역과 비교하여 금연캠퍼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음
- 미국의 경우 대학 구성원의 동의 및 참여를 우선 기반으로 대학 내 금연정책을 형성하였으며,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근거기반의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이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 - 미국암협회에서도 학생, 직원 및 교수로 구성된 금연위원회 구성, 대학 구성원에게 금연정책 교육 및 홍보,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계획, 금연정책 형성, 대학 구성원의 흡연행태 사정은 금연캠퍼스 운영의 필수요건으로 정의함¹⁷⁾
-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대학의 금연구역은 교사로만 정의되어 있고 금연캠퍼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며, 금연캠퍼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됨
 - 금연캠퍼스 운영인력 부족, 금연캠퍼스 시 대학 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등의 이유로 불충분한 흡연구역, 지켜지지 않는 금연구역에 대한 불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연캠퍼스 시행대학 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금연 갈등은 심화되고 있음¹⁸⁾
- 우리나라 금연캠퍼스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연캠퍼스 관련 법적 근거 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술적 지원,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해 보임
 - 금연캠퍼스의 안정화를 위하여 대학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, 금연구역 모니터링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연캠퍼스 운영가이드라인, 대학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기반의 금연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 - 더불어 우리나라 금연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연 홍보물 설치, 교육자료 제공 등 금연캠퍼스 정책 도입 시 필요한 일정 자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

15)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, https://www.cdc.gov/tobacco/data_statistics/fact_sheets/adult_data/cig_smoking/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

16) 통계청 (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), http://www.index.go.kr/potal/main/EachDtlPageDetail.do?idx_cd=2929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

17) American Cancer Society, <http://www.cancer.org/acs/groups/content/@editorial/documents/document/acspc-048572.zip>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

18) 한국대학신문, <https://news.un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55064>에서 2016년 12월 12일 인출